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6,958,020	11,608,741
일반회계	354,916,270	10,647,488
특별회계	32,041,750	961,253
기타특별회계	32,041,750	961,253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366,297	70,989
섬진강댐특별회계	5,820,000	174,60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177,000	125,310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5,735,371	172,06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9,547	15,286
기반시설특별회계	82,807	2,4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183,046	365,49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67,682	35,030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155,162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